## 2 장학규정

## 장학 규정

### 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학칙 제14장에 의거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 (적용범위) 장학관리는 따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### 제 2 장 장학위원회

- 제3조 (목적)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 및 환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장학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 4조 (구성)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이,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기획처장, 교무처장, 총무처장, 입학처장 및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1. 3. 1, 2012. 11. 1, 2015. 5. 1, 2020. 1. 28)
- 제 5조 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 (개정 2012, 11, 1)
  - 1.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
  - 2. 장학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
  - 3.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. 수혜기간 및 지급기준액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
  - 4.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  - 5. 국가장학금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
  - 6. 기타 필요한 사항
- 제 6조 (위원장의 권한) 위원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 - 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괄한다.
  - 2. 위원장의 유고시나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 6조의2 (장학사정관제) ① 맞춤형 장학정보 제공과 상담 및 면학지원을 위하여 장학사정관제를 운영한다. (신설 2012, 11, 1)
  - ② 장학사정관은 학생처장이 추천하는 교직원으로 한다. (신설 2012. 11. 1)
  - ③ 장학사정관은 교내외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. (신설 2012, 11, 1)

### 제 3 장 장학금지급

- 제 7조 (지급대상) 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
  - 1.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
  - 2. 재학생중 학업성적 우수자
  - 3. 가정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
  - 4. 본교 교직원 직계자녀
  - 5. 본교 교직원으로서 재직 중 사망한 자의 직계자녀
  - 6. 국가유공자 등 법률규정에 명시된 자
  - 7. 근로, 봉사 및 간부학생 (개정 2012, 11, 1)
  - 8. 국가와 학교발전에 공헌한 자 및 직계자녀
  - 9. 공무원 채용후보자(5급 이상) 및 각 학과·학부 교수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
  - 10. 신앙심이 독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
  - 11. 산학협동 공로자 및 직계자녀
  - 12. 특별한 선행이 있는 자
  - 13.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자
  - 14. 체육특기자로서 전국규모대회에서 수상한 자 (개정 2012, 11, 1)
  - 15. 기타 학생처장 또는 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(개정 2012, 11, 1)
  - 16.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학생을 추가 선발하거나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. (신설 2012, 11, 1)
- 제8조 (장학금) ① 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[별표]에 따른다. (개정 2012. 11. 1, 2015. 3. 2, 2016. 3. 2. 2017. 3. 1, 2018. 3. 1, 2019. 3. 1, 2020. 1. 28)
  - 1. ~ 14. 〈삭제 2012. 11. 1〉
  - ② [별표]에 명시되어 있는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. (신설 2020. 1. 28)
- 제 8조의 2 (기타장학) 장학금 지급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 (신설 2012. 11. 1)
- 제 8조의 3 (교외장학금) 교외장학금은 해당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하며,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. (신설 2012. 11. 1)
- 제 9조 (지급정지 및 취소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단,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(개정 2019.10.28)
  - 1. 휴학·자퇴 및 제적된 자
  - 2. 직전학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
  - 3. 학칙을 위배하여 징계처벌을 받은 학생 (개정 2019.10.28)
  - 4. 〈삭제 2012. 11. 1〉
  - 5.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(단, 총장장학금은 제외) (개정 2012, 11, 1)

- 6. 〈삭제 2012. 11. 1〉
- 7. 학칙에 따른 이수학기 초과자 (개정 2012, 11, 1, 2019,10,28)
- 8.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달성에 희망이 없다고 총장이 인정하였을 때
- 9. 1학기 이상 연속 지급되는 장학의 경우 수혜기간동안 기준 성적 미달시(별표기준) (신설 2012. 11. 1, 개정 2013. 10. 1)

#### 제10조 (장학금지급원칙) 장학급 지급원칙은 다음과 같다.

- 1. 지급기간 : 장학금 지급기간은 1학기로 한다.
- 2. 지급액 : 장학금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.
- 3. 〈삭제 2012. 11. 1〉
- 4. 지급한도 : 장학금의 지급한도는 등록금 범위 내로 한다. 단, 자격증취득, 대회수상, 해외연수 지원, 생활비보조, 교육훈련지원, 연수체재비지원, 봉사(근로), 글로벌리더장학, 기숙사장학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. (개정 2011, 3, 1, 2012, 11, 1)
- 5. 장학금 지급방법 : 장학금은 감면 또는 은행 계좌입금으로 한다. (개정 2012, 11, 1)
- 6. 〈삭제 2012. 11. 1〉
- 7. 1학기 이상 연속 지급되는 장학의 경우 수혜기간동안 교내 타 성적장학과 이중수혜 불가하며, 상위장학(수혜금액 상위)만 수혜가능하고, 연속장학 횟수에 포함된다. 단, 재직자전형장학금은 제 외한다. (신설 2012. 11. 1, 개정 2013. 10. 1, 2016. 3. 2)
- 8. 총장 A장학금 추천 해당자가 없을 경우, 총장 B장학금 추천 배정인원 1명 추가 배정 한다. (신설 2015, 3, 2)
- 9. 동점자 처리 기준은 따로 정한다. (신설 2015. 3. 2)

#### 부 칙(2020, 1, 28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**〈별표〉**(개정 2016. 3. 2, 2017. 3. 1, 2019. 3. 1, 2020. 1. 28)

# 신 · 편입생장학

구분	입시전형	선발요건	인원	장학금액	지급기간
총장 l 장학	수시 · 정시	<ul> <li>해당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, 수학, 영어 3개 과목 합이 6등급 이내인 자</li> <li>직전 학기 평점 평균 3.5이상인 경우계속 지급</li> <li>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 및 성적 미달시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 정지, 총 2회 탈락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 종료</li> </ul>	해당자	· 등록금 전액 · 도서비 연간160만원 · 생활관비	4년
총장॥ 장학	수시 · 정시	· 해당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, 수학, 영어 3개 과목 합이 8등급 이내인자(모집단위 입학정원 10%이내) · 직전 학기 평점 평균 3.5이상인 경우 계속 지급 ·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 및 성적 미달시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 정지, 총 2회 탈락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 종료	해당자	· 등록금 50% · 도서비 연간80만원 · 생활관비	4년
지역우 수인재 장학 l	수시	<ul> <li>· 지역 고교(충청, 대전, 세종) 출신자로서 우리 대학 학생부 반영방법에 의한 평균석차등급 1.00∼1.99인자 (단, 국영수 합 55시수이상)</li> <li>· 적용 전형 : 학생부, 면접, 지역학생, 실기,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(검정고시 제외)</li> <li>· 직전 학기 평점 평균 3.5이상인 경우 계속 지급</li> <li>·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 및 성적 미달시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 정지, 총 2회 탈락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 종료</li> </ul>	해당자	· 등록금 전액 · 도서비 연간80만원	4년
지역우 수인재 장학॥	수시	<ul> <li>· 지역 고교(충청, 대전, 세종) 출신자로서 우리 대학 학생부 반영방법에 의한 평균석차등급 2.00~2.49인자 (단, 국영수 합 55시수이상)</li> <li>· 적용 전형 : 학생부, 면접, 지역학생, 실기,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, 농어촌전형 (검정고시 제외)</li> <li>· 직전 학기 평점 평균 3.5이상인 경우 계속 지급</li> <li>·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 및 성적 미달시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 정지, 총 2회 탈락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 종료</li> </ul>	해당자	· 수업료 50%	4년

구분	입시전형	선발요건	인원	장학 <del>금</del> 액	지급기간
수시 수석 장학	수시	· 모집단위별(학부,학과)수석 · 적용 전형 : 학생부, 면접, 지역인재, 실기(검정고시 제외) · 평균 평점 3.0이상인 경우 계속 지급 · 성적 미달시 장학금 지급 종료	해당자	· 수업료 50%	1년
수시 우수 장학	수시	· 모집단위별(학부,학과) 상위 10%이내인 자 · 적용전형 : 학생부, 면접, 지역인재, 실기, 호서인재 (검정고시 제외)	해당자	· 수업료 50%	1학기
정시 수석 장학	정시	· 모집단위별(학부,학과)수석 · 적용 전형 : 수능, 면접, 실기 · 평균 평점 3.0이상인 경우 계속 지급 · 성적 미달시 장학금 지급 종료	해당자	· 수업료 50%	1년
정시 우수 장학	정시	· 모집단위별(학부,학과) 상위 10%이내인 자 · 적용 전형 : 수능, 면접, 실기	해당자	· 수업료 50%	1학기
체육 특기자	수시	·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전공별 수석 · 평균 평점 3.0이상인 경우 계속 지급 · 성적 미달시 장학금 지급 종료	해당자 -	· 수업료 50%	1년
장학		·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전공별 차석		· 수업료 50%	1학기
편입생 장학	편입학	<ol> <li>편입학전형으로 선발된 자</li> <li>단, 직전학기 평균평점 2.5 미만인 경우연속 지급 종료</li> <li>다른 편입학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</li> </ol>	해당자	· 일정금액	1년
		2. 협약기관편입생 • 대학부설기관, 협약체결기관(5년이내)에서 편입한 자 ※ 직전학기 평균평점 3.0 미만인 경우연속 지급 종료	해당자	· 일정금액	1년
재 외국민 장학	수시 · 정시	시·정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자 해	해당자	· 입학금 감면 · 정착장학금1회	1회
				· 생활관비	4년
서해 5도 장학	수시 · 정시	시·정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자	해당자	· 입학금 감면 · 정착장학금1회	1회
				· 생활관비	4년

# 재학생장학

구분	선발요건	장학금액	지급기간
총장장학	1. 총장A: 직전 학기 성적 4.0 이상자 중 학장이 추천한 자 2. 총장B: 직전 학기 성적 3.5 이상자 중 학장이 추천한 자 ※ 배정 인원: 직전 학기 각 학부 및 학과(전공)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. 단, 편제 개편 또는 모집중지 등으로 인하여 배정이 불가한 학과의 경우 유사학과(전신학과)와 통합하여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. 문화예술학부, 스포츠과학부 등 트랙으로 모집하는 학부의 경우 트랙별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. ※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인자 지급 불가	1.수업료 50% 2.수업료 30%	1학기
특별장학	<ol> <li>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있는 자</li> <li>경제적 어려운 자로서 품행이 바르다고 인정되는 자</li> <li>관장부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</li> <li>기타 지급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</li> </ol>	일정금액	일정기간
봉사장학	교내 행정부서 및 학과 등에서 근로 및 봉사한 자·근로, 멘토, RE:born학습(선후배사랑학습공동체), 튜터, 어깨동무, 채플봉사, SNS홍보단, 대학홍보단, 기타봉사 등	일정금액	1학기
글로벌리더 장학	총학생회 및 기타 학생자치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직전 학기 평균 평점 2.5이상인 자	일정금액	1학기
교직원 장학	재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포함하여 2인까지로 하며 평점 2.0이상인 자	등록금 전액	4년
체육우수 장학	체육특기자로서 아래 지급방식에 따른다. 1. 1등급 : 전국규모대회 개인 및 단체 우승 입상 2. 2등급 : 전국규모대회 개인 및 단체 2위 입상 3. 3등급 : 전국규모대회 개인 및 단체 3위 입상 단, 전국규모대회의 정의 및 장학금 지급대상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	1.수업료 전액 2.수업료 2/3 3.수업료 2/3	1. 1년 2. 1년 3. 1학기
소망장학	가정경제가 어려워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대상자, 기타가계곤란자 등	일정금액	1학기
국가유공자 장학	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규정된 유공자 및 그 자녀 중 교육 보호 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의 규정에 따라 직전 학기 백분율 70점 이상인 자	등록금전액(본인) 등록금반액(자녀)	4년
희망장학	장애인복지법 29조에 의거 장애등급 1급, 2급, 3급 등록증 소지자	일정금액	1학기
가족장학	본교 학부 및 대학원과정에 직계가족 2명 이상 재학 중일 경우 학부과정 학생 1인에게 지급	일정금액	1학기
학군단 장학	학군단(R.O.T.C) 학생 중 우수한 자로서 선발	일정금액	1학기

구분	선발요건	장학금액	지급기간
벤처 프런티어 장학	(2018학년도 이전) - 재학생 중 벤처프런티어로 선발된 자 -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.5인 경우 계속지급(2학년 1학기 성적부터 적용) -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미만 및 성적 미달 시 장학금 지급 종료. 단, 벤처프런티어운영위원회에서 구제될 경우 예외 (2019학년도부터) - 재학생 중 벤처프런티어로 선발된 자 - 직전 학기까지 평점 평균 3.5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, 벤처프런티어로 선발된 자에게는 해당 프로그램 수료시 책정된 장학금지급	등록금 전액 생활관비 해외연수비(1회)	4년
		일정금액	일정기간
미래인재 (국가고시) 장학	미래인재(국가고시)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	일정금액	일정기간
학과 장학	학과에 배정된 장학 예산에 대해 성적 우수, 저소득층, 근로, 기타 사유 등으로 선발된 자	일정금액	1학기
한마음 장학	가정경제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학업 유지가 곤란한 자로서 학생생활상담소 운영위원회, 교목실 또는 장학사정관이 추천한 자	일정금액	1학기
기숙사 장학	입학우수자 및 벤처프런티어 전형으로 선발된 자	일정금액	1학기
외국인 유학생 장학	외국인 유학생 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	일정금액	1학기
북한이탈 주민장학	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로서 직전 학기 백분율 70점 이상인 자	등록금 반액	4년
국제화 장학	해외연수자(어학연수, 교환학생) 및 해외봉사자에게 지급	일정금액	1학기
재입학 장학	본교 재입학한 자	입학금 전액	1학기

구분	선발요건	장학금액	지급기간
취업준비 장학	취업 준비 목적으로 졸업을 연기한 자(학기초과자)	일정금액	1학기
재직자전형 장학	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한 자	수업료 50%	4년
실습조교 장학	실습조교로 선발된 자	일정금액	1학기
연구조교 장학	연구조교로 선발된 자	일정금액	1학기
현장실습 장학	현장실습에 선발된 자	일정금액	1학기
산학융합 캠퍼스 장학	※ 산학융합캠퍼스 해당 학과 대상 ※ 성적 우수, 저소득층, 근로, 기타 사유 등으로 선발된 자		_
통학지원 장학금	재학 중 교내 셔틀버스를 이용한 자를 대상으로 별도 기준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	일정금액	1학기
미래용합 대학장학	미래융합대학에 입학 및 재학 중인 자 중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	일정금액	4년
CanDo 마일리지 장학금	CanDo 마일리지를 일정 수준 이상 취득한 자	일정금액	1학기
호서 동문사랑 장학금	동문 졸업생 자녀에 대한 학업장려를 위하여 부모 중 1인이 본교 졸업자인 재학생 중 장학생으로 선발	일정금액	재학중 1회
기타 장학	부서에 배정된 장학 예산에 대해 성적 우수, 저소득층, 근로, 기타 사유 등으로 선발된 자	일정금액	1학기